###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것 ? 3

제출년월일 : 1995. 5.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1995. 7. 1부터 시장이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정무직정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에 따라 증설된 정수시설운영관리 인력과 수도시설관리소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인력을 보강하고, '95. 5. 16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은 813명에서 814명으로 하고, 사업소는 1,081명에서 1,10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정원의 총수 54명을 추가 규정함. (안 제2조)
- 나. 부칙 제2조에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함.(안 부칙 제2조)

### 3.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개정내용

- 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총 전	개 정
1. 본청 2. 직속기관 3. 출장소	1. 본청 2. 의회사무기구 3. 직속기관
<ol> <li>4. 사업소 5. 읍 · 면 · 동 및 그 출장소</li> </ol>	4. 출장소 5. 사업소 6. 자치구가 아닌 구
*	7. 읍 · 면 · 동 및 그 출장소

#### 나. 공무원정원 증원안

① 시본청 : 지방정무직 1명(시장요원) 증원

○ 사 유 : '95.7.1부터 시·도지사가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

② 상수도사업본부: 25명증원(월평정수사업소 21명, 수도시설관리소 4명)

○ 월평정수사업소 : 21명(현재 41명 → 보강후 62명)

·사유 : '95.5.13 제2단계 확장공사준공으로 증설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 인력보강

ㅇ 월평정수장 2단계 확장 현황

·건물: 9,988m² → 16,293m² (증: 6,305m²)

· 1일 시설(생산)용량: 20만톤 → 40만톤(증 20만톤)

• 사 업 비 : 327억원

· 공사기간 : '92. 5. 14 ~ '95. 5. 13

• 확장후기대효과.

┌ 수도물 생산량 증가 : 629천톤/일 → 829천톤/일(증 31%)

- 급수보급률 증대 : 92.7% → 93.4% (증 0.7%)

└ 둔산 신시가지 및 시외곽 미급수 지역 해소 : 6개동

○ 수도시설관리소 : 4명(현재 17명 → 보강후 21명)

· 사유 : 수도계량기의 정밀한 성능시험으로 불량계량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94년 11월 설치된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 인력 확보

ㅇ 수도계량기 시험실 설치 현황

•위 치 : 중구 산성동 수도시설관리소내

· 건 평 : 129평(시험실 90평, 사무실 39평)

• 사 업 비 : 418백만원

· 공사기간 : '94. 7. 1 ~ '94. 11. 30

• 장비내용

장 비 명	구경별	수 량	기 능(용 도)
기차 시험장치	<b>∮-</b> 13M/M	2조	5종류의 유량을 통과시켜 오차시험하는 장치
	<b>∮ -</b> 20-25M/M	1조	н
기차 시험장치	<b>f</b> - 13M/M	2조	5종류의 유량을 통과시켜 오차시험하는 장치
n ·	<b>f =</b> 20-25M/M	1조	
	<b>f</b> = 40-50M/M	1조	п
	f = 70-10M/M	1조	
	∮-150-300M/M	1조	
내구성 시험장치	f = 13-50M/M	1조	오랜시간동안 본래의 성능유지여부 시험
시동유량시험장치	f = 13-50M/N	1조	소량의 유량을 통과시켜 지침작동여부시험
내압 시험장치	<b>∮ -</b> 13-300M/N	1조	17.5kg/cm의 압력에 견디는지 여부시험
모터펌프	5HP	6대	내구성 시험용

・1일 평균업무량 : 94년도 기준 51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의 본청·의회사무기구 ·소속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 청 : 814명

2. 의회사무기구 : 54명

3. 직 속 기 관: 714명

4. 사 업 소:1,106명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본청 1명(지방 정무직)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및 제83조"와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을 삭제한다.

제3조중 제목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 신・구조문 대 비 표

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의 <u>본청및</u>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 청 : · 813명 (신 설) 2. 직속기관 : 714명 3. 사 업 소 : 1,081명	제2조(정원의 총수) 의회 사무기구·소속기관에 두는 1. 시 본 청 : 814명 2. 의회사무기구: 54명 3. 직속기관 : 714명 4. 사 업 소 : 1,106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시본청1명(지방정무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한다.
	제1조중"및 제83조"와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을 삭제한다. 제3조중 제목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제4 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①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현	채	개 정 안
대전광역시의회사 의 정수등에 관한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 조 및 제83조의 규 시 의회사무처(아) 설치 및 사무직원	려는 지방자치법 제82 정에 의하여 대전광역 하 "사무처"라 한다)의 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제82조</u> 설치에 관하여
	처는 의장의 지휘·감독  의와 입법활동에 관련 다.	제2조(직무)
 며, 지방부이사관 은 의장의 감독을	P무처에 사무처장을 두 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 1을 지휘·감독한다.	<u>제3조(사무처장</u> ) ① ②
사무직원의 정수는 급별 정원은 대전	정수) 사무처에 두는 54명으로 하며, 그 직 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개정94.7.15 조례 제	(삭 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1995년 6월 1일 내 무 위 원 회

###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5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 6. 1)

상정, 심의, 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요지 (제안자 : 기획관)

1. 제 안 이 유

1995. 7. 1부터 시장이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정무직 정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에 따라 증설된 정수시설 운영관리 인력과 수도시설 관리소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인력을 보강하고, '95.5.16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 가.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13명에서 814 명으로 하고, 사업소는 1,081명에서 1,106명으로 하고, 의회 사무기구 정원의 총수 54명을 추가규정함(안 제2조)
- 나. 부칙 제2조에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함(안 부칙 제2조)

###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이학구)

본안건은 금년 7월1일부터 시장이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정무직 정원을 신규로 확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확장에 따라 그 관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지난 5월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본청 정원으로써 오는 7월1일부터 시·도지사가 국가 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요원 지방정무 직 1명을 증원하고

둘째 사업소의 정원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월평정수 장 제2단계 확장사업에 따라 정수관리인력 21명을 증원하고 수도시설관리소의 불량계량기 유입방지를 위한 시험실 운영 인력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셋째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 5월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정원 54명을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에따라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본 조례 부칙에 명시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따라서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본청은 813명에서 814명, 의회사무기구는54명, 직속기관은714명, 사업소는1,081명에서 1,106명으로 조정되겠음.

다만 의회사무처 정수는 현재 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회의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었는바, 이는 총정원 관리 측 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아니었다고 봄.

따라서 본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별도의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회사무처의 인력 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Ⅳ.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